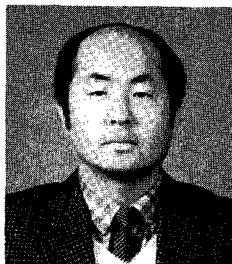


경기의 자연회복 한계 넘어섰다



배성황
삼화농원 대표

1. 배경

'92년초부터 시작된 극심한 불황은 '93년 냉동닭,' '95년 냉장닭 수입개방마저 박두한 현시점에서 볼 때 불황의 기간이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계업, 부화업내지 도계업을 포함한 전육계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육계산업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종계 입식현황을 보면 앞으로 전혀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불황의 원인은 생산과잉과 소비위축이 동시에 작용 한것으로 생산측면에서 보면 지난 수년간 지속된 호황으로 과다하고 무리한 시설투자와 정부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의 시설지원이 엄청난 생산과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반경기의 퇴조로 20% 이상의 소비위축을 가져와 장기간의 불경기로 이어진다고 보겠다.

정부의 축산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엄청난 불경기를 몰고온 주된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

며, 이로 인하여 자주적인 시설투자는 전면 중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개방일정에서 자꾸만 가까와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는 현실로서 정부의 축산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양계인들은 좋은 나쁘든, 경쟁력이 있든 없든 가지고 있는 시설로 안일한 타성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비와는 거리가 먼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업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양계업 특유의 생산조절에 따른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경기의 자연회복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업은 우리가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함으로서 공동침몰을 피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현행대로 무조건 자유방임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규제내지 생산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필요한 공통인식

가. 생산조절 필요성 여부

이러한 자구의 노력을 위하여 생산조절이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치 않는가에 대한 업계 전체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가급적 모든 종계, 부화인이 공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나. 합리적이고 공정적인 업계의 협조

모든 계획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공정적이고 적극적인 조절 방안을 제시하고 다함께 협조하자.

3. 실천방안

가. 원종계 생산조절

- (1) 각 GPS농장의 직원과 협회직원 1명으로 구성된 종계 생산조절 실무추진위원회를 육계, 산란계 별로 구성한다.
- (2) 입란중지를 2개월간 자체입식, 수입포함하여 전면 중지토록 한다.
- (3) 각 GPS농장은 실무위원

회에 매주 입란 가능한 종란 숫자를 우, ↑별로 보고하고, 실무위원회의 주도하에 GP처리 또는 공업용으로 처리토록 한다.

(4) 위 입란예정 종란을 매주 일정한 요일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실무위원회의 주도하에 GP처리 또는 공업용으로 처리토록 한다.

(5) 위 기간중 각 GPS농장은 자의든 타의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PS생산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GPS농장에서 지도록 하므로 최종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한다.

(6) 이계획의 강력한 시행을 위하여 이 계획이 의결된 후 자의든 타의든 생산조절 기간중 생산된것이 확인될 경우 농림수산부에 미리 요청하여 축산법(제13조 6항)에 의하여 생산조절 명령을 하거나 종계수입 추천을 1년동안 불허토록 원종계협의회 및 양계협회 명의로 요청하며, 또한 PS농장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동품 종 불매를 결의하도록 한다.

(7) 수입종계를 과다하게 수입하면 조절의 의의가 없으므로 '93년, '94년은 당초

농수산부에 제출된 수입계획서를 근거하여 종계분과 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정부에 수입추천을 조정하도록 건의한다.

나. 종계의 생산조절

(1) '93년 4월 1일 현재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전 종계장을 파악하여 원종계농장에 통보토록 하고 '93년 5월 1일부터는 등록된 종계장에만 판매토록 하고 판매된 종계는 이월 5월까지 원종계협의회에 통보토록 한다.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종계를 입식일자, 품종 및 주령별로 '93년 4월 30일까지 파악토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산망을 구축토록 한다.

(3) '93년 5월 1일부터는 등록된 종계장에만 판매토록 원종계농장에 의무화하고 불이행 하는 수입원종계농장에는 수입추천을 일정기간(1년) 중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내산 원종계에 대하여는 외부판매를 규제하거나 종계등록을 하여 주지 않고 고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종계생

산 조절실무추진위원회에서 월례모임을 통하여 통제도록하며 종계장은 동품종을 불매토록 결의한다.

(4)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노계도태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종계생산 조절실무위원회에서도 크게 도태여부를 관리토록 한다. 토태명령을 받고 2주일이내 도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에는 명령을 받은 업자로부터 1주일이내에 조절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절위원회에서도 이를 위임받아 도태토록한다.

(5) 조절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노계전문도계장이나 기타 창구와 계약을 하여 도태하며 도태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한다.

(6) 현행 종계등록 의무기한이 너무 길어 (120일 이내) 경우에 따라 등록의무가 해 이해 지므로 입식후 1주일 이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법 개정을 의뢰토록 한다.

다. 그 외 장기대책방안

(1) 원종계 입식조절

원종계협의회와 종계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전문가의 지문으로 열어 매년 적정물량을 산정하여 종계수입추천시 활용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정책집행에 반영토록 한다.

(2) 종란 입란조절

협회의 종계분과위원회와 육계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필요시에는 (초생추 가격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시) 일정기간 일정한 물량의 종란의 입란시키지 않도록 의결, 정부에 건의집행토록 한다.

(3) 위생수준에 따른 생산조절

가축위생 대책협의회에 심사에 따라 각 종계장 및 부화장의 위생등급 판정을 공표하고 ① 일정한 수준(등급)이하의 종계장 및 부화장에서는 종란 및 초생추를 그 수준이 개선될때까지는 입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등급판정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일반농장들이 구매선을 다른곳으로 전환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게 한다.

4. 생산조절에 따른 문제점

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위법성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반사회적 담합이 아닌 자율적인 활동이므로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고, 한편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조절을 명 할 수 있으므로 법적 뒷바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계열화 업체의 생산 조절 협조여부가 변수이겠으

나 국내 전체 양계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이 있어야만, 계열화 업체도 큰 영향을 안받고 운영할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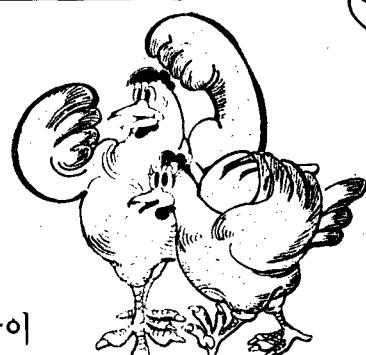
이에 따라 생산조절에 동참함이 넓은 안목에서는 바람직하고 결국은 이해가 일치된다고 본다.

다. 업계 내부의 이해 상충이 제일 커다란 문제점인데 각 업체마다 각기 특수한 여건과 처지가 다르겠지만

경기 회복과 생업사수의 차원에서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만 이해를 조율, 공존할 수 있다.

라. 조절이 과다하여 공급에 차질을 우려할 수 있으나 수시로 종계분과의원회와 생산조절 실무위원회가 동향을 파악하여 조절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홍보한다.

우량중추 선택이 농장성공의 열쇠



- 고객의 신뢰속에 우량중추만을 생산해온 무지개농장이
- 초현대식 시설의 무창 자동화 중추계사를 신축,
- 국내 중추업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무지개농장

대표한기석

주 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70
TEL: (0334) 72-3322

- * 완전 주문생산제 실시
- * 완벽한 방역프로그램
- * 철저한 음인 올아웃
- * 무창, 유창계사 함께 운영